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. 10. 25 선고 2020가단6294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 A

피 고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석

변 론 종 결 2022. 9. 6.

판 결 선 고 2022. 10. 25.

주 문

1.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에게, 피고들은 각 1/2 지분에 관하여, 여수시 D 대 142㎡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, 2, 10, 9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ㄴ) 부분 1㎡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, 위 선내 (ㄴ) 부분 1㎡을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(이하 ‘원고들’이라고 한다)은 여수시 D 대 142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고 한다)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의 소유자이고,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여수시 E 대 204㎡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(이하 위 건물을 ‘이 사건 건물’이라고 한다)의 소유자이다.

나. 이 사건 건물의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, 2, 10, 9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ㄴ) 부분 1㎡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(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침범한 토지 부분을 ‘이 사건 계쟁 토지’라고 하고,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계쟁 토지 지상에 있는 부분을 ‘이 사건 계쟁 건물’이라고 한다)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수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들은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계쟁 토지에 이 사건 계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소유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계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

1) 주장의 요지

피고들의 아버지인 F는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를 1984. 8. 28. 매수하고 보수 및 증축 공사를 하여 1984. 9. 21.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때부터 F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

이상 점유하여 2004. 9. 22.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.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G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,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.

2) 판단

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 혹은 피고들이 이 사건 계쟁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또한 설령 F 혹은 피고들이 이 사건 계쟁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,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사이의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계쟁 건물의 증축 당시 F는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, F의 점유는 악의의 무단 점유에 해당한다.

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장선중

선 정 자 명 단

- 1. H
- 2. I
- 3. J
- 4. K
- 5. L

별지

감 정 도

(2020가단 629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)

토지 소재	여수시 2 필	축척	$\frac{1}{300}$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-

현황 표시

범례	명칭
	분할경계선
	지적선
	이경반한

면적 표시

지번 부호	면적(㎡)	비고
-	141	7~10, 2~6, 7를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
-	1	1~2, 10, 9, 1를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

